

2020년도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년도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

< 2020년도 보건의료 R&D 추진방향 >

◇ **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&D 투자를 '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**
- 기초연구·응용연구를 균형 있게 확대

2020년도 전략목표

**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으로 사람중심 혁신성장 실현,
공익적 R&D 투자 강화로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**

4대 전략별

중점 추진방향

바이오헬스 산업 혁신	① 혁신 신약의료기기,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 ②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
공익적 R&D 투자 강화	③ 감염병, 치매,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&D 확대 ④ 의료비 절감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 건강증진 R&D 지원
병원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	⑤ 병원을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 ⑥ 혁신성장을 견인할 보건의료 핵심인재 양성
소재·부품·장비 국산화 지원	⑦ 백신, 화장품 소재, 보조기기 등 국산화 지원 강화

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공고 개요

신청요건

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국 공립 연구기관
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「고등교육법」 제 조에 따른 학교
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단체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

신청 제한

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
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
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개임

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
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」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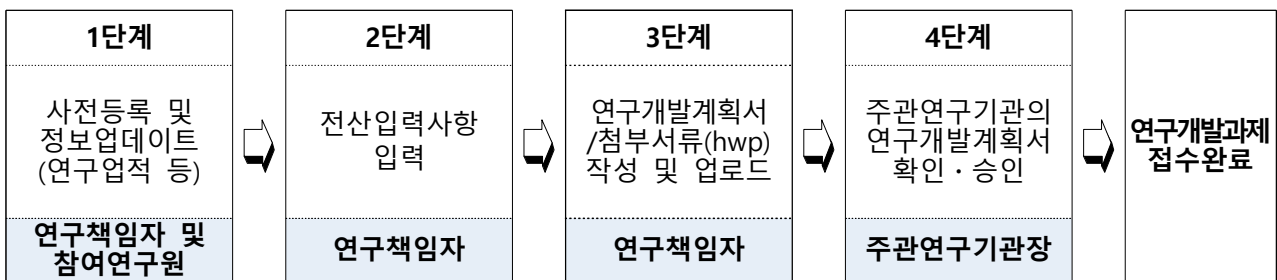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**주관 및 세부책임자가**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신청 방법

□ 신청방법

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
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

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


□ 서류제출기한

공고단위 (RFP)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시	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시
1-1.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	2020. 7. 1(수) 18 : 00	2020. 7. 2(목) 18 : 00

※ 공고단위(RFP)별 신청마감시간(18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

* RFP에 따라 신청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마감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'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
(www.htdream.kr)'에 공지함

※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관련 법령 및 규정

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
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
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

기 타

□ 참여기업 부담금(세부과제별 산정)

- 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- 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항목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	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	현물 부담액의 50% 이내	현물 부담액의 70% 이내	-
	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, 기술도입비	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	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% 이내	-

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청년인력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 을 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
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
연구시설 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연구시설 장비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을 작성·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

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에서 심의 실시 선정과제 별도 안내

기술료 제도 안내

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
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

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 중 영리기관에 한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

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 대상과제는 에 표기

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안내서 참조

문의처

홈페이지

소관부처 보건복지부

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

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

질의응답

공고단위 별 담당자 안내